

확인서면

등기의무자	성명		등기의 목적
	주소		
	주민등록번호		
본인확인정보	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기타()		
특기사항	일시 : 20 년 월 일 (오전/오후) 시 경		
	장소 :		
	기타 :		
필적기재	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.		성명
우무인			

위 본인확인정보에 따라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「부동산등기규칙」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.

변호사 죄장섭